

대통령령 제18110호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3년 10월 17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 관

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 : 1리터당 14원. 다만, 미주지역·구주지역(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1리터당 14원에서 당해 지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1리터당 추가수송비(미주지역·구주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의 수송비 차액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의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 1리터당 14원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입한 석유에 대한 부과금 :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부과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석유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로 한다.
-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 : 당해 석유제품의 판매일(부과금의 부과제외사유가 아닌 용도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①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이 영의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제5조(석유판매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제6조(석유수입부과금의 금액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리터당 10원으로 한다.

[별표 3]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제23조제1항제1호관련)

품목번호(HSK)	품 명
2709-00-1010~2000	원유
2710-11-1000	자동차휘발유
2710-11-2000	항공휘발유
2710-19-1010	제트연료유
2710-11-4000	나프타
2710-11-5000	엔지엘(NGL)
2710-11-9000	기타(하이솔벤트 및 페트롤리 움벤진을 제외한다)
2710-19-2010	등유
2710-19-2020	제트원료유
2710-19-2090	기타
2710-19-3000	경유
2710-19-4010	경질중유(B-A유)
2710-19-4020	중유(B-B유)
2710-19-4030	병키씨유(B-C유)
2710-19-4090	기타
2711-11-0000	천연가스(액상)
2711-19-0000	기타
2711-21-2000	천연가스(가스상)
2711-29-0000	기타
2713-20-0000	석유아스팔트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이유

국제석유시장에서 석유수급불균형 등의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원유(原油)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인상하고, 원유도입선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